Question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nswer

● 출원인코드신청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로→사용자등록신청→서비스신청 및 조회→출원인코드부여 신청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서면신청안내→관련서식 다운로드 "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인코드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한번만 부여 받으면 향후 모든 특허절차 수행할 때에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류중인 출원번호 : 1999년 이전 출원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출원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기재 : 내국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법인 및 외국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인감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적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 만약 이 경우 출원인코드부여통지서를 부여받고 그 즉시 발견한 경우에는 접수담당자에게 가서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적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의 인감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아무 도장이나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등록된(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날인한) 인감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취지]란 다음의 기명 · 날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의 ○○○의 인감]란을 만들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Question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 출원인코드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거나 출원인코드의 중복부여에 따른 정정신청은 " 출원인코드정정신청서 "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원인코드의 오기재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출원되었다면 정당한 출원인으로 출원인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특허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uestion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nswer

●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 · 이의신청 ·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 · 이의신청서 ·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5조)

※ 특허청에서는 대전본청 고객서비스팀과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 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안내 ·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방에도 상공회의소 내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 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특허청 지정 무료 변리상담소를 개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 민원상담관 연락처

- 대전 본청 : 042-481-5221, 5222
- 서울사무소 : 02-568-8155(내선 320, 321, 326)

※ 대한변리사회 : ☎ 02-3486-3486, 인터넷 www.kpaa.or.kr

Question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변리사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까?

Answer

● 먼저, 산업재산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 변리사와 출원절차 진행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임계약이 성립하면 출원서의 작성 및 절차의 진행은 대리인이 준비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대리인]란을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출원은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바, 특허출원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특정 대리인을 통하여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 · 특허이의신청 · 심판청구 · 재심청구를 하거나 특허이의신청 · 심판청구 ·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대리인선임신고 후에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대리권의 내용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특허청에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허법 제33조) 만일 발명자가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주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됩니다.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5조)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특허법 제3조)
-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출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가 출원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 양도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

Question

법인격이 있는 조합의 특정지역 지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대전지부와 같은 명의로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 출원인코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이 출원인적격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원인 적격이 없는 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출원인적격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지부명의로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는 ‘ 서울특별시 ’의 형태로, 기타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명의로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